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63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곽상언 · 김 윤 · 장종태
문금주 · 김 현 · 박용갑
박선원 · 권향엽 · 강득구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

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재심사 청구인이 결정·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제7항, 제109조제3항·제4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① ~ ⑤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 음)</p> <p><u>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보를 보내야 한다.</u></p> <p><u>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u></p>

<신 설>

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